

꽃 박람회

제13회 대구

2022.6.3(금)-6(일) exco

제13회 대구꽃박람회 사무국
 우)41515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로 10
 T 053-601-5239 F 053-601-5069
 http://www.flowerdaegu.kr
 E-mail : flower@exco.co.kr

신청기한 2022. 4. 29(금)

참가신청서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주 소			대표번호
담당자	성명	부서	직위
	휴대폰	FAX	E-mail (세금계산서 수신용)
참가전시 분야	<input type="checkbox"/> 철화, 하치물, 종묘 <input type="checkbox"/> 포장자재 <input type="checkbox"/> 꽃 가공품 <input type="checkbox"/> 플라워 관련잡화 <input type="checkbox"/> 건축&홈인테리어 <input type="checkbox"/> 생산자재 <input type="checkbox"/> 점포 관련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서적·잡지 <input type="checkbox"/> 가드닝 용품 <input type="checkbox"/> 웨딩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요전시 품목	Web-Site		

필수입력사항

간판명	(국문)	(영문)
출입증명		출입증수량 *출입증은 참가업체당 3장 제공됩니다.

※ 기본제공비품 이외에 추가로 비품을 사용하고자 하시면 비품임대업체에서 임차 후 사용가능합니다.

신청내역 및 금액

※ 조기신청할인, 부스규모할인 중복적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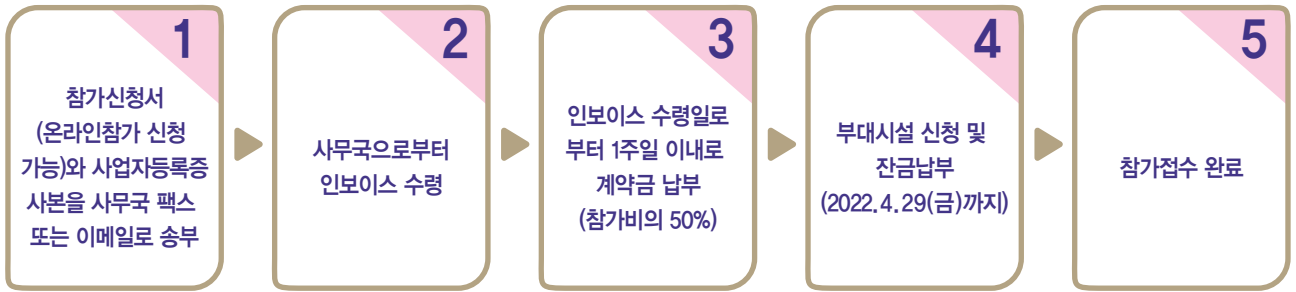
구 분	내 역						단 가	금 액	
부 스	부스타입	독립부스		()부스		₩1,300,000	원		
		목공 기본부스		()부스		₩1,600,000			
	할인혜택	조기신청 할인		2022. 3. 31(목)까지		- ₩200,000			
		부스규모 할인		4부스 이상 참가업체		- ₩100,000			
전 기	일반(전시시간) ※24시간 전기 신청은 사무국 문의	단상 220V	()kW	삼상 220V	()kW	삼상 380V	()kW	₩50,000/kW	원
전 화	국 내	대						₩70,000/대	원
	국 제	대						₩150,000/대	
급/배수	개소						₩150,000/개소	원	
압축공기	개소						₩150,000/개소	원	
LAN	PORT						₩100,000/PORT	원	
소 계								원	
부가가치세(VAT)								원	
합 계								원	

온라인 납부 : 대구은행 504-10-438303-1 예금주 : (주)엑스코 (송금시 '회사명'을 반드시 기재)
 ※ 신청계약금(VAT를 포함한 금액의 50%)은 신청서(사업자등록증 사본 동봉) 제출 후 일주일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 참가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전시회 종료일자로 일괄적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금계산서 선발행요청은 사무국으로 문의바랍니다.
 이면의 전시회 참가규정을 수락하고 계약금과 입금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동봉, 상기와 같이 참가신청 및 계약체결 하고자 합니다.

2022년 월 일 대표자 (인) / 담당자 (인)

제13회 대구꽃박람회 사무국 귀중

신청방법 및 납입방법



* 부스배정 기준은 참가규모, 계약금 입금 순이며 전시품 성격에 따라 사무국에서 임의 배정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전시회 참가약관

제1조 (용어의정)

1. '전시자' 라 함은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단체 및 개인등을 말한다.
2. '주최자' 라 함은 "대구광역시" 를 말한다.
3. '주관자' 라 함은 "EXCO" 를 말한다.
4. '전시회' 라 함은 "제13회 대구꽃박람회(Daegu Flower Show 2022)" 를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1.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참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VAT를 포함한 총 합계금액의 50%를 참가계약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장면적이 소진된 경우 또는 출품예정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참가신청 접수 후에도 주관자는 전시회 사정에 따라 15일 이내에 참가신청과 참가계약금 등 기납부금을 반렐할 수 있다.
3. 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 기술지원신청서 등 제반 제출서류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관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제3조 (부스배정)

1. 주관자는 참가신청 접수순, 신청면적, 전시품의 성격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전시자별 부스 위치를 배정하며 전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주관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장치기간 이전이면 전시자에게 배정된 부스위치 및 면적을 전시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관자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전시장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부스(booth)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주관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대 또는 상호간 교환할 수 없다.
5. 전시자는 전시장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상변경을 할수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최자의 원상복구 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6. 주최자는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제5조 (참가비 납입 조건)

1. 전시자는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신청금을 참가신청서 제출시 납입해야 하며, 잔금 50%는 2022년 4월 29일(금)까지 납입해야 한다.
2. 전시자가 잔금을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관자는 참가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전시자가 참가비, 기술지원비 등 제반비용 미납시, 주관자는 원납시까지 선택적으로 그 전시자의 전시품을 유치할 수 있다.

제6조 (전시자의 참가취소 또는 변경)

1. 전시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사용을 취소할 시, 전시자는 즉시 주관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2. 본조 1항의 통보가 전시회 개최일 전 2개월 전까지 수령된 경우 주관자는 전시자로부터 받은 참가비 중 참가계약금을 제외한 기납부 참가비를 취소한 전시면적에 따라 전시자에게 환불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동 취소통보가 전시회 개최일 전 2개월 후에 주최자에게 수령된 경우, 환불을 하지 아니한다.
3.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관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기타 주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관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지정 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9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전시자는 지정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관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을 즉시 주관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주관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한다.
2.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 기간 중 발생하는 배당면적내의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최·주관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 경비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 (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관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보충규정)

1.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전시자는 주관자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주관자와 전시자에게 발생하는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른다.

제13회 대구꽃박람회 사무국